의안 번호	807

2021. 8.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진해구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취득) 등 4건]

창원시

목 차

1. 진해구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1

2.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조성사업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 4

3. 팔룡복지회관 건립(부지변경)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 7

4.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공유재산 교환 및 처분
[해양항만수산국 해양정책과] ····· 11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안 번호	807

제출연월일 : 2021. 8. 31.
제 출 자 : 창 원 시 장

1. 제안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창원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의결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1) 『진해구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 건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가. 목 적

○ 진해구 국민운동단체 사무실 노후화 및 회의장 부재로 환경개선 및 독립된 사무공간 필요성이 제기되어 구)창원상공회의소 진해지소를 매입 후 위탁하여 단체 자긍심 고취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진해구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
○ 위 치 :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 522-1번지
○ 사업기간 : 2021년 7월 ~ 2022년 5월
○ 사 업 비 : 3,700백만원(시비) **※ 부가세 별도**
○ 사업규모 : 대지면적 1,404㎡, 연면적 1,631.92㎡(지상4층~지하1층)

다. 취득 재산 조서

○ 취득가액 : 3,700백만원
- 토지매입비 : 2,960백만원
- 건물매입비 : 740백만원

○ 취득대상지 현황

사업명	소재지	건축규모	추정가액(백만원)				
			총 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기타
진해구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석동 522-1	부지면적 : 1,404㎡, 연 면 적 : 1,631.92㎡ 층 수 : 지하1/지상4	3,700	-	-	3,700	-

○ 건물 층별 개요

구 분	용 도	면적 (㎡)	비 고
주	사무공간(지하1~지상3)	1,382.42	
〃	회의실(지상4)	223.4	
합 계		1,605.82	

※ 1층(별동) 수위실(26.1㎡) 철거

라. 그간 추진상황

○ 진해구 국민운동단체 회관 건립 건의 : ‘21. 05.
- 구)창원상공회의소 진해지소 건물 매입 후 위탁(시→단체)

○ 시장님-진해구 국민운동단체 간담회 : ‘21. 06.

○ 시의원 5분 자유발언 : ‘21. 06.

○ 진해구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 건물매입 계획 수립 : ‘21. 07.

○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신청 : ‘21. 08.

마. 향후 추진계획

○ ‘22년 본예산 확보 : ‘21. 12.

○ 감정평가 및 매입가격 합의 : ‘22. 02.

○ 소유권 이전 : ‘22. 03.

○ 건축물 리모델링 및 운영 위탁 : ‘22. 05.

바. 기대효과

○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 등 환경개선으로 자긍심 고취

○ 교육 및 회의실 제공으로 단체의 사회봉사활동 활성화에 기여

위 치 도


세화여자
고등학교
창원상공회의소 진해지소
현대셀프
석동주유소
푸르지오
이메진커피
S-OIL-LPG
동부충전소
롯데마트
장복초등학교
진해한림
아파트

현 장 사 진



2)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조성』 건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가. 목 적

○ 지역간 균형적인 체육인프라 구축으로 시민만족도 제고

○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한 지역주민 여가생활 개선 및 체력증진 도모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조성사업

○ 위 치 : 창원시 진해구 자은동 459번지 일원

○ 사업기간 : 2019. 7. ~ 2024. 12.

○ 사 업 비 : 31,100백만원(국비 3,000 도비 1,000 시비 27,100)

○ 사업규모 : 체육시설조성(A=92,691㎡), 지하주차장(7,286㎡) 등

○ 주요시설 : 공인야구장 2면, 연식(리틀)야구장 1면, 풋살장 5면 등

【세부조성계획】

구 분			면 수	면 적(㎡)	비 율(%)	비 고
합 계				92,691		
체육시설		소 계		41,100	44.3	
		공인야구장	2	27,600	29.7	
		연식야구장	1	9,000	9.7	리틀야구장
		풋살장	5	4,500	4.9	
편의시설		소 계		51,591	55.7	
		도 로	1	3,205	3.5	L=312, B=10m
		화장실	1	160	0.2	
		주차장	1	2,425	2.6	대형-8대
		녹 지	1	45,801	49.4	

※ 부대시설(야구장 지하) : 주차장(4,718㎡-142면), 샤워실 및 휴게실(450㎡), 관리실(180㎡), 화장실(100㎡), 야구연습장(880㎡), 창고(180㎡), 공용공간(618㎡)

다. 취득 재산 조서

○ 취득가액 : 31,100백만원

- 토지매입비 : 20,228백만원
- 건물신축 및 조성비 : 10,872백만원

○ 건물 신축계획(안)

사업명	소재지	설치규모	추정가액(백만원)			
			총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조성사업	진해구 자은동 459번지 일원	·체육시설:92,691㎡ ·지하주차장/화장실: 7,286㎡	31,100	3,000	1,000	27,100

마. 그간 추진상황

○ 입지선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계획수립용역 : ‘19. 06.

○ G.B관리계획(변경) 및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 용역착수 : ‘19. 09.

○ G.B관리계획 반영 요청(시→경남도) : ‘20. 03.

○ G.B관리계획 경상남도 자체 심사 : ‘20. 05.

○ G.B관리계획 국토교통부 사전심사(원안가결) : ‘20. 10.

○ 경상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원안가결) : ‘21. 01.

○ 국토교통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조건부가결) : ‘21. 07.

○ 지방재정투자심사 의뢰(시→도→행안부) : ‘21. 08.

바. 향후 추진계획

○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결정, 설계용역(PQ) 발주, 물건조사 : ‘22. 02.

○ 실시계획인가, 보상협의(~23.12.) : ‘22. 06.

○ 공사 착공 : ‘22. 06.

○ 공사 준공 : ‘24. 12.

사. 기대효과

○ 주52시간 근무시간 정착에 따라 여가시간을 활용한 체육활동 욕구 충족

○ 균형적인 생활체육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 도모

○ 스포츠시설 집적화로 각종 대회유치 및 유동인구 증가에 따른 침체된 지역경기 활성화 및 활력 회복

○ “K-스포츠 메카도시 창원” 에 걸맞은 이미지 및 위상 제고

위 치 도



현 장 사 진









3) 『팔룡복지회관 건립(부지변경)』 건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가. 목 적

○ 舊.39사단 부지개발 이익금을 활용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성장 동력 창출과 창출과 인근 지역 주민생활 편의 향상 및 낙후 원도심 재생

○ 낙후된 의창구 일원 복지인프라 부족에 따른 지역 주민들의 복지 욕구 충족 및 도시 역량 강화

나. 사업개요

구 분	당 초	변 경
위 치	■ 의창구 팔용동 126-5 외 3필지 ※나대지 신축(시유지)	■ 의창구 팔룡동 103-4번지 ※現팔룡동 행정복지센터 수직 증축(시유지)
사업기간	■ 2017년 2월 ~ 2019년 9월	■ 2017년 2월 ~ 2023년 12월
사 업 비	■ 3,000백만원 - 공사비 : 2,800백만원(신축) - 설계 및 감리비 : 200백만원 ※ 舊.39사단 부지개발 이익금 : 시비 100%	■ 3,000백만원 - 공사비 : 2,785백만원(구조보강 포함) - 설계 및 감리비 : 215백만원 ※ 舊.39사단 부지개발 이익금 : 시비 100%
사업규모	■ 부지면적 1,125.1㎡ ■ 연면적 1,100㎡(지상2층)	■ 부지면적 1,449.5㎡ ■ 증축면적 650㎡(1 ~ 2개층) - 전체 연면적 4,816.7㎡
주요시설	■ 탁구장, 헬스장, 독서공간, 다목적 홀 등	■ 변동없음

다. 변경사유

○ 건립 부지 선정관련 주민 간 의견 대립에 따라 상호 이견이 없는 팔룡동행정복지센터 수직 증축으로 사업계획 변경

라. 취득 재산 조서

○ 취득가액 : 3,000백만원

- 건물증축비 : 3,000백만원
- 토지매입비 : 없음(시유지)

○ 건물 증축계획(안)

사업명	소재지	증축규모	추정가액(백만원)			
			총사업비	국비	도비	시비
팔룡복지회관 건립	의창구 팔룡동 103-4번지	연면적 650㎡ (지상1 ~2개층)	3,000	-	-	3,000

※ 기존 건축물 현황(현 팔룡동행정복지센터)

명 칭	위 치	구 조	주 용 도	연 면 적	층 수	사용승인	비 고
팔룡동 행정복지센터	의창구 팔용동 103-4	철근콘크리트 구 조	공공업무시설 (행정복지센터)	4,166.7㎡	지하 2층 /지상 4층	'16.06.16.	-

마. 그간 추진상황

○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회) : '17. 06.

○ 지방재정 투자심사 완료 : '17. 09.

○ 팔룡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주민의견 조회 및 수렴 : '17. 09. ~ '21. 05.

⇒ 인근주민 건립반대에 따른 대안(규모조정, 대체부지매입, 건물 리모델링 등) 도출 및 찬반의견 조율

○ 팔룡동행정복지센터 증축 가능 여부 검토 : '21. 05. ~ 07.

⇒ 건축(감리) 및 구조설계사무소 구조검토 결과 600~700㎡ 증축 가능

⇒ 실시설계 시 기존건축물 구조 안전성 확보에 따른 구체적 증축 규모 결정 가능

바. 향후 추진계획

○ 재정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 '21. 08. ~ 12.

○ 공공건축 심의 및 설계용역 : '22. 01. ~ 11.

○ 일상감사 및 공사계약 : '22. 12. ~ '23. 01.

○ 공사착공 및 준공 : '23. 02. ~ 12.

사. 기대효과

○ 복지회관 건립 부지선정 문제로 인한 주민 갈등 해소

○ 기존 행정복지센터와 통합 관리로 효율적인 시설물 유지관리 가능

○ 시설 확충에 따른 다양하고 유연한 복지프로그램 운영으로 복지서비스 향상 및 시너지효과

○ 증축 위치는 당초 계획부지 보다 접근성이 우수하여 복지시설 이용 편리

위 치 도


당초계획 부지
중축계획 위치
참사랑 요양병원
중동대동다숲 아파트
탑볼링센터
오일뱅크
조상일 정형외과의원
SK셀프 주유소
세븐일레븐
CU
국제아파트
창원여자 중학교
창원성민여자 고등학교
남산공원
남산 (98.6m)
벽산블루밍 C단지아파트
동창원농협
창원 웨딩의전당
마산
창원
스타벅스
스카이모텔
금복빌딩
창원힘찬병원
경남이주민 노동복지센터
소망 어린이공원
팔룡평생 학습센터
극동아파트
행정복지센터
대동 중앙아파트
팔용벽산블루밍 A단지아파트
스시타로
대동 차용아파트
중앙모터스
창원 테크노밸리
GS-LPG 충전소
창원반계LH 아파트
미르말 어린이공원
원풍아파트
벽산블루밍 B단지아파트
사화초등학교
GS칼텍스
경남창조경제 혁신센터
창원산새소리 유치원
팔용중학교
심산서울병원
평산초등학교
팔용어울림
고향의봄 도서관
창원과학 고등학교
언덕위의 나볼리
이차돌

현 장 사 진



4)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공유재산 교환 및 처분』 건

【해양항만수산국 해양정책과】

가. 목 적

○ 부산항 신항 건설 당시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관련 협약 이행

- 웅동지구(1지구) 사업부지 내 2개 소멸 어업인 조합의 생계대책용 부지 제공(매각)

○ 생계대책민원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사항(처분대상, 방법, 가격 등) 이행

○ 소멸어업인 생계대책부지 처분(매각)을 통한 소멸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생계대책 마련 및 장기 집단민원 해소

나. 사업개요

○ 사 업 명 : 웅동지구(1지구) 개발사업

○ 위　　치 : 진해구 제덕동, 수도동 일원

○ 사업기간 : 2003년 ~ 2021년

○ 사 업 비 : 3,461억원 (창원시 49억원, 공사 87억원, 민간 3,325억원)

○ 사업면적 : 2,258,692.1㎡ (약68만평)

○ 주요시설 : 골프장,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스포츠파크 등

※ 생계대책부지 : 진해소멸어업인조합(112,400㎡), 의창소멸어업인조합(112,400㎡)

다. 교환 재산 조서

○ **교환사유**

- 의창소멸어업인조합에 제공할 생계대책 부지는 112,400㎡이며, 시유지 처분 가능 면적은 99,707㎡로 약정된 면적보다 12,693㎡가 부족하여,
- 의창조합 생계대책부지와 인접한 경남개발공사 소유 토지 12,693㎡와 교환하여, 생계대책 부지 112,400㎡를 제공

※ 국민권익위원회 조정사항 반영

○ 교환처분(창원시→경남개발공사)

지 번	지목	지적(㎡)	대상면적(㎡)	재산가격(천원) (개별공시지가)	가감정액(천원)	비고
제덕동 898-1	잡	345.685.9	12,693	882,164 (69.5)	1,034,480	분할 예정

○ 교환취득(경남개발공사→창원시)

지 번	지목	지적(㎡)	대상면적(㎡)	재산가격(천원) (개별공시지가)	가감정액(천원)	비고
수도동 296	잡	386,269.8	12,693	882,164 (69.5)	1,034,480	분할 예정

※ 향후 감정평가 결과 차액발생시 정산 예정

라. 처분 재산 조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매각사유 :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협약 이행

○ 처분근거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 (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를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 (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 시 ·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공급 가능**
-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시 · 도지사와 협의하여 정하는 가격**

※ 국민권익위 조정(사업시행자, 도지사 포함)**에 따른 토지 공급방법, 가격 결정**

○ 처분(매각) 대상

처 분 대상자	지 번	지목	지적(㎡)	대상면적(㎡)	재산가격(천원) (개별공시지가)	조정가격(천원) (단가)	비 고
계	**5필지**		**611,069.8**	**224,800**	**14,690,245**	**1,380,946**	
진해소멸 어업인조합	제덕동 898-2	잡	1,462	1,462	101,609 (69.5)	**8,981** (6.143)	
	제덕동 898-3	잡	110,938	110,938	7,710,191 (69.5)	**681,492** (6.143)	
의창소멸 어업인조합	수도동 296	잡	386,269.8	12,693	882,164 (69.5)	**77,973** (6.143)	분할예정 교환취득
	수도동 296-1	잡	9,825.8	1,459	101,401 (69.5)	**8,963** (6.143)	분할예정
	수도동 299	잡	102,574.2	98,248	5,894,880 (60.0)	**603,537** (6.143)	분할예정

마. 그간 추진상황

○ 부산항 신항 건설사업에 따른 어업피해보상 약정 : ‘97. 06. 12

○ 토지 소유권이전등기 (국토해양부 → 구.진해시, 경남개발공사) : ‘09. 02. 24

○ 소멸어업인 권리보전 협약 : ‘09. 10. 19

○ 생계대책토지 유상매각 협약 : ‘12. 02. 01

○ 토지 처분을 위한 협의 착수 (창원시 ↔ 생계위) : ‘15. 02. ~

➠ **토지처분가격에 대한 이견으로 토지매매계약 미체결**

○ 국민권익위 고충민원 접수 : ‘21. 02. 03

○ 국민권익위 조정 협의 진행 : ‘21. 02. ~ 07.

○ 공유재산 심의회 용도폐지 및 교환·처분 심의 : ‘21. 08.

바. 향후 추진계획

○ 국민권익위 조정서 체결 : ‘21. 09.

○ 감정평가(교환토지) 및 분할측량 : ‘21. 09. ~ 10.

○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 ‘21. 10. ~ 12.

○ 교환계약(경남개발공사) 체결 및 소유권 이전 : ‘21. 11. ~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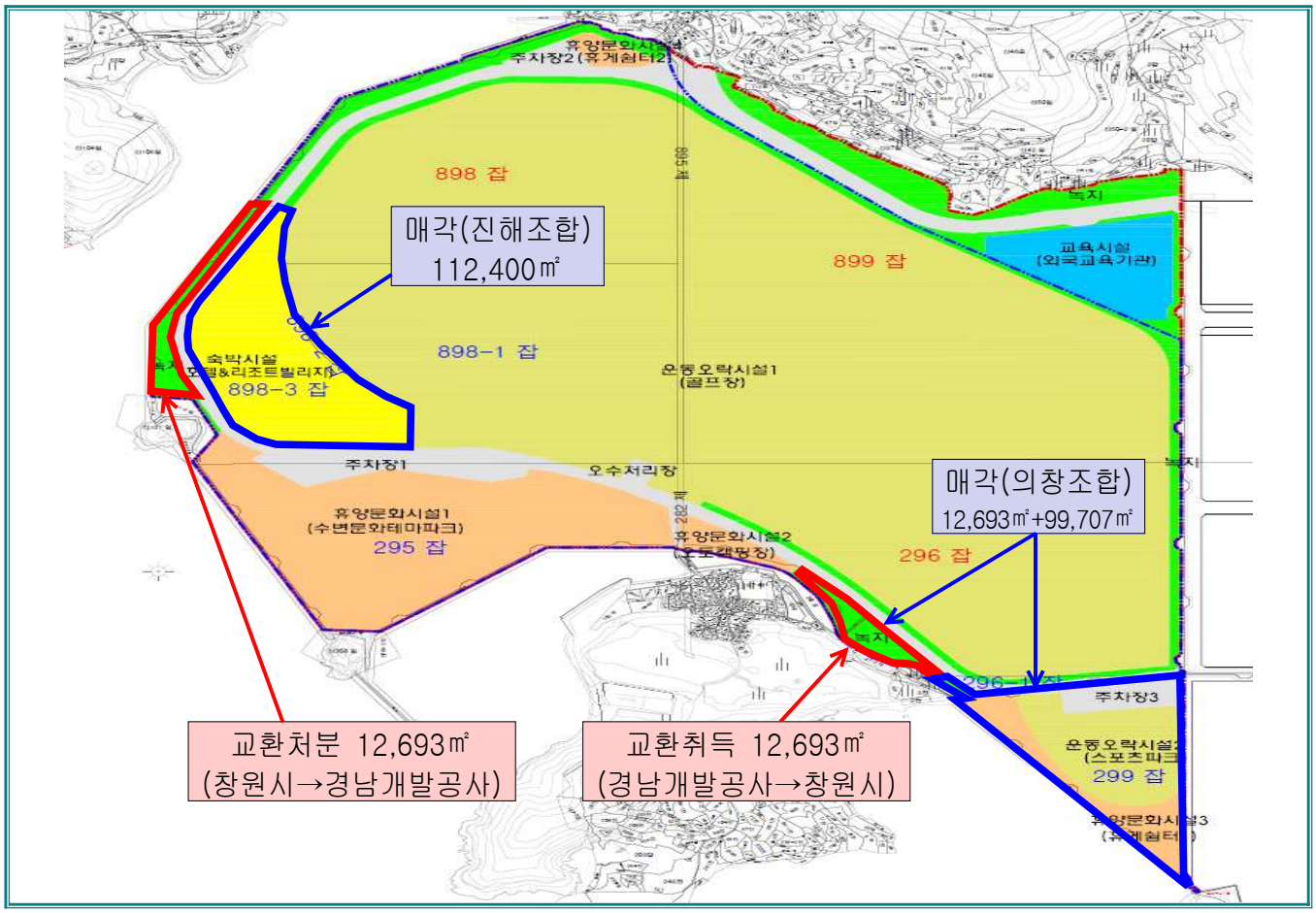
○ 생계대책부지 매각 추진 : ‘22. 01. ~

사. 기대효과

○ 생계대책부지 매각을 통한 장기 집단 민원 해소

○ 생계대책 협약 이행 및 소멸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생계대책 마련

위 치 도


898 잡
매각(진해조합)
112,400㎡
899 잡
교육시설
(외국교육기관)
898-1 잡
숙박시설
898-3 잡
온동오락시설1
(골프장)
주차장1
오수처리장
휴양문화시설1
(수변문화테마파크)
295 잡
휴양문화시설2
296 잡
매각(의창조합)
12,693㎡+99,707㎡
주차장3
299 잡
교환처분 12,693㎡
(창원시→경남개발공사)
교환취득 12,693㎡
(경남개발공사→창원시)

현 장 사 진


매각(진해조합)
교환(처분)
매각(의창조합)
교환(취득)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021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표)

회 계 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구 분			건수	면적	금액	비고
취득	계	토지	45	71,744	24,222	
		건물	2	2,282	3,740	
		기타	1	92,691	10,872	
	1. 매 입	토지	44	59,051	23,188	
		건물	2	2,282	3,740	
		기타	1	92,691	10,872	
	2. 교환으로 취득	토지	1	12,693	1,034	
		건물	-	-	-	
		기타	-	-	-	
	3. 기타취득	토지				
		건물				
		기타				
처분	계	토지	6	237,493	2,415	
		건물	-	-	-	
		기타	-	-	-	
	4. 매 각	토지	5	224,800	1,381	
		건물	-	-	-	
		기타	-	-	-	
	5. 양 여	토지				
		건물				
		기타				
	6. 교환으로 처분	토지	1	12,693	1,034	
		건물	-	-	-	
		기타	-	-	-	
사용 및 대부허가		계				
		토지				
		건물				
		기타				

2022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일련번호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 고 (취득방법)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합계				3,035.92	3,700			
		소계		1,404	2,960			
1	토지	진해구 석동 522-1	대지	1,404	2,960	2022년 (상반기)	진해구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	매입
		소계		1,631.92	740			
1	건물	진해구 석동 522-1	-	1,631.92	740	2022년 (상반기)	진해구 국민운동단체 사무공간 확보	매입

202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문화체육관광국 체육진흥과)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일련번호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 고 (취득방법)
		소재지	지목	면적(㎡)				
합계				92,691	30,300			
		소 계		60,470	10,443.7			
1	토지	진해구 자은동 454	잡	4,758	1,570.1	2023년 (하반기)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조성사업 편입	토지매입 (국유지)
2		진해구 자은동 454-1	도	252	32.8			
3		진해구 자은동 459	잡	15,853	4,438.8			
4		진해구 자은동 505-1	잡	3,218	1,287.2			
5		진해구 자은동 506-1	답	1,381	552.4			
6		진해구 자은동 507	답	1,094	437.6			
7		진해구 자은동 466	전	136	38.1			
8		진해구 자은동 501	임	359	143.6			
9		진해구 자은동 1105-8	구	7,424	705.3			
10		진해구 자은동 1105-64	구	611	58.0			
11		진해구 자은동 1105-92	도	94	8.9			
12		진해구 자은동 1105-103	구	212	20.1			
13		진해구 자은동 1105-113	구	26	2.5			
14		진해구 자은동 1139	도	418	39.7			
15		진해구 자은동 산 1-3	임	9,530	428.9			
16		진해구 자은동 산 1-28	임	15,104	679.7			
		소 계		2,823				
17	토지	진해구 자은동 442-1	천	5	-	2023년 (하반기)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조성사업 편입	대체취득 (자산관리 협의)
18		진해구 자은동 452-1	과	74	-			
19		진해구 자은동 452-2	과	89	-			
20		진해구 자은동 454-3	잡	476	-			

일련번호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 고 (취득방법)
		소재지	지목	면적(㎡)				
21	토지	진해구 자은동 485-2	답	104	-	2023년 (하반기)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조성사업 편입	대체취득 (자산관리 협의)
22		진해구 자은동 486-1	답	217	-			
23		진해구 자은동 500	답	20	-			
24		진해구 자은동 501-2	임	99	-			
25		진해구 자은동 502-1	답	108	-			
26		진해구 자은동 503	답	7	-			
27		진해구 자은동 505-3	잡	865	-			
28		진해구 자은동 산 1-52	임	751	-			
29		진해구 자은동 산 1-53	임	8	-			
		소 계		29,398	9,784.7			
30	토지	진해구 자은동 442	천	91	10.0	2022년 (하반기) ~ 2023년 (상반기)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조성사업 편입	토지매입 (사유지)
31		진해구 자은동 452-3	과	445	146.8			
32		진해구 자은동 453	답	1,159	382.5			
33		진해구 자은동 453-1	답	1,429	471.6			
34		진해구 자은동 455	답	879	290.0			
35		진해구 자은동 455-1	답	880	290.4			
36		진해구 자은동 456	답	545	179.9			
37		진해구 자은동 478	답	308	101.7			
38		진해구 자은동 479-1	답	698	230.3			
39		진해구 자은동 479-2	답	691	228.0			
40		진해구 자은동 479-3	답	1,322	436.3			
41		진해구 자은동 479-4	답	1,884	621.7			
42		진해구 자은동 479-5	답	1,134	374.2			

일련번호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 고 (취득방법)
		소재지	지목	면적(㎡)				
43		진해구 자은동 479-6	답	1,597	527.0	2022년 (하반기) ~ 2023년 (상반기)	진해복합스포츠시설 조성사업 편입	토지매입 (사유지)
44		진해구 자은동 480	답	1,835	605.6			
45		진해구 자은동 481	답	781	257.7			
46		진해구 자은동 482-1	답	1,954	644.8			
47		진해구 자은동 482-2	답	1,332	439.6			
48		진해구 자은동 483	답	1,030	339.9			
49		진해구 자은동 483-1	답	1,030	339.9			
50		진해구 자은동 483-2	답	515	169.9			
51		진해구 자은동 484	답	2,225	734.3			
52		진해구 자은동 485	답	1,984	654.7			
53		진해구 자은동 485-1	답	1,917	632.6			
54		진해구 자은동 486	답	256	84.5			
55		진해구 자은동 502	답	174	69.6			
56		진해구 자은동 506-4	답	1,303	521.2			
		소 계			**10,872**			
기타	건축물 및 시설설치비				10,872	2022년 (하반기)~	부지조성 및 시설공사비	기타부대비용 800백만원 포함

202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 (복지여성보건국 노인장애인과)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일련번호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취득시기	취득사유	비 고 (취득방법)
		소재지	지목	면적(㎡)				
합계				**650**	**3,000**			
1	건물	의창구 팔룡동 103-4번지	-	650	3,000	2023	복지회관 건립	증축

2021년도 교환대상 재산목록 (해양항만수산국 해양정책과)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일련번호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교환시기	교환사유	비 고 (교환방법)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1	토지 (처분)	진해구 제덕동 898-1	잡	12,693	1,034	2021년 (하반기)	의창소멸어업인조합 생계대책부지 부족분 확보 (국민권익위 조정)	등가교환 (차액정산)
2	토지 (취득)	진해구 수도동 296	잡	12,693	1,034			

2021년도 처분대상 재산목록 (해양항만수산국 해양정책과)

□ 회계명 : 일반회계 (단위 : ㎡, 백만원)

일련번호	구분	재 산 표 시			추정가액	처분시기	처분사유	비 고 (처분방법)
		토지소재지	지목	면적(㎡)				
합계				224,800	1,381			
1	토지	진해구 제덕동 898-2	잡	1,462	9	2021년 (하반기)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협약	수의계약
2	토지	진해구 제덕동 898-3	잡	110,938	681	2021년 (하반기)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협약	수의계약
3	토지	진해구 수도동 296	잡	12,693	78	2021년 (하반기)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협약	수의계약
4	토지	진해구 수도동 296-1	잡	1,459	9	2021년 (하반기)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협약	수의계약
5	토지	진해구 수도동 299	잡	98,248	604	2021년 (하반기)	소멸어업인 생계대책 협약	수의계약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수립 · 변경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공유재산의 범위, 관리계획의 작성기준 및 변경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았을 때에는「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요 재산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이하 "공유재산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2.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1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2. 제12조 단서에 따라 무상으로 회계 간의 재산 이관을 하는 경우
3. 제24조 또는 제34조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는 경우
4.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 · 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1조제2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4조의2제1항의 운영기준에서 정한 처분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제39조(교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재산인 토지, 건물, 그 밖의 토지의 정착물을 국유재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
2.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재산의 가치와 효용도를 높이는 데 필요한 경우로서 매각 등 다른 방법으로 해당 재산의 처분이 곤란한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공공용재산으로 사용하거나 소규모 일반재산을 한 곳에 모아 관리함으로써 재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필요하여 교환을 요청한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 또는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교환을 할 때 교환하는 일반재산의 종류·가격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교환하는 경우 양쪽의 가격이 같지 아니할 때에는 그 차액을 금전으로 내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증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20억원(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서울특별시와 경기도의 경우에는 20억원)
2. 토지의 경우 1건당 토지 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
   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
   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2천제곱미터)

지 방 자 치 법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창원시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창원시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유재산의 취득 · 처분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관한 사항
3. 삭제
4.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기간 갱신에 관한 사항
5. 공유재산의 무상사용허가 또는 무상대부
6. 법 제21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기부채납된 재산의 사용허가 기간 갱신
7.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시장은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법 제10조와 영 제7조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세워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① 개발사업시행자는 경제자유구역 내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급하여야 한다.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지정용도의 준수, 사용의무기간의 준수, 전매금지 및 환매특약 등의 조건을 붙여 공급할 수 있고, 그 공급가격을 조성원가 이하로 할 수 있다.

③ 개발사업시행자가 공급하는 조성토지의 용도별 공급절차·방법, 가격기준,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1조의4(조성토지의 공급방법 등) ① 법 제9조의7제2항에서 "외국인투자의 유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에 법 제9조의7제1항에 따른 조성토지(이하 "조성토지"라 한다)를 공급하는 경우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제6조의5제2항제4호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 또는 사업자단체가 소속 조합원 또는 사업자에게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도지사가 외국인투자유치나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개발사업시행자가 조성토지를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경쟁 입찰의 방법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의 방법에 따라 공급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⑤ 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법 제9조의7제2항에 따라 조성원가 이하로 조성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하는 가격에 따른다.